

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안

2024. 1.

특 허 심 판 원
(심 판 정 책 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특허심판에 심판청구 직권보정,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법률 제19714호, 2024. 3. 15. 시행)을 신설하고,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특허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실용신안법에도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와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심판청구 직권보정 및 심판참고인 제도로 인해 신설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를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서 준용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를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특허법 제141조, 제154조의3(2024. 3. 15. 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9.~3.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제65조까지”를 “제64조까지,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까지, 제65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31조,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0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의2, 제58조, 제60조부터 <u>제65조까지</u> ,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5까지,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부	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①		<u>제64조까지</u> , <u>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까지</u> , <u>제65조</u>

A handwriting practice sheet with 15 rows of dashed lines on a solid background. The first row contains a small dot at the beginning, and the last row contains a small dash at the beginning.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5917